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9. 20 선고 2023가단2069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주영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유세

변 론 종 결 2023. 8. 23.

판 결 선 고 2023. 9. 20.

주 문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2.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22. 2. 23. 접수 제111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6. C 등의 연대보증하에 D에게 3억 원을 이자 연 7%, 변제기 2016. 5. 30.(1억 5,000만 원), 2016. 7. 30.(9,000만 원) 및 2016. 10. 30.(6,0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은 2023. 2. 23.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그 부인인 피고 앞으로 2023. 2. 23.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바(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이 사건 아파트는 C과 피고의 공유재산이므로 피고의 공유지분에 관한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②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혼을 앞둔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미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며, ③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써 취득할 수 있는 지분만큼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는데(민법 제830조 제1항), 갑 제3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C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C과 피고의 공유재산으로 볼 수 없고, ②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피고와 C이 협의상 이혼을 한 바 없고, 오히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3. 6. 30. C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3드단701251)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이혼을 앞둔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미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¹⁾, ③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민법 제839조의2 제2항), 피고와 C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거나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현 단계에서 피고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써 취득할 수 있는 지분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강종선

별 지 목 록

1. 경기도 광주시 아파트 호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광주시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주시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철골트러스구조

지붕20층 아파트

지층 700.98㎡

1층 715.44㎡

2층 712.92㎡

3층 712.92㎡

4층 712.92㎡

5층 712.92㎡

6층 705.36㎡

7층 705.36㎡

8층 705.36㎡

9층 705.36㎡

10층 705.36㎡

11층 705.36㎡

12층 705.36㎡

13층 705.36㎡

14층 705.36㎡

15층 705.36㎡

16층 705.36㎡

17층 705.36㎡

18층 705.36㎡

19층 705.36㎡

20층 235.1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101.88㎡

1) 피고도 답변서에서 “피고는 2022.초순경부터 C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C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이혼의사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러한 C의 요청을 받아들여 C과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대신에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던 것입니다.”라며 협의이혼의사의 철회를 조건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